

- (3)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4)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u>13.0*</u>	A. 4.0 이상	<u>13.0*</u>
			B. 3.0 이상	<u>10.9*</u>
			C. 2.0 이상	<u>8.8*</u>
			D. 1.0 이상	<u>6.7*</u>
	2) 일반기술자	<u>11.0*</u>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u>11.0*</u>
			4) 안전기술자(3년 이상)*	<u>3.0*</u>
			A. 15인 이상(12인 이상)	<u>11.0*</u>
			B. 12인 이상(9인 이상)	<u>8.8*</u>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 는 대표자만 평가)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u>3.0*</u>	C. 10인 이상(6인 이상)	<u>6.5*</u>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 안전기술자(3년 이상)*	<u>3.0*</u>	A. 2인 이상*	<u>3.0*</u>
			B. 2인 미만*	<u>1.8*</u>
	1)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1.0
			B. 1건	<u>0.8*</u>
(다) 신기술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 는 대표자만 평가)	2) 신기술 활용 실적	3.0	A. 50억 원 이상*	3.0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u>2.8*</u>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u>2.6*</u>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 녹색·일반 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u>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u> B. <u>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u> C. <u>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u>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u>환경친화기업 지정*</u>	1.0 1.0 1.0 0.5 1.0 0.5 1.0 1.0
3) 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 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업체* -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C.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3 0.5 0.3 0.1
5) 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u>자활기업, 마을기업**</u>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1.0** 1.0**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 <2018.12.1. 시행>

** <2018.1.1. 시행>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2018.12.1. 시행>
- 다)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018.12.1. 시행>
-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를 평가한다. <2018.12.1. 시행>
- 사)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8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218,419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이며, 2018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요내용				견적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예외 : 제4절 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017.2.1. 시행>
-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 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 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라)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 마)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 (인접 시·도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2018.12.1. 시행>

나. 수의계약 요령

-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